

### 3. 所得税法中改正法律

法律 第4,520號 1992. 12. 8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단체중 국  
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2호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  
자공제 · 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6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상여등 불정기적  
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  
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250만원이하

〈공제액〉

총급여액

250만원초과

250만원+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0

제61조의2 제1항중 “년 24만원”을 각각  
“년 5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의3 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의료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  
료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라 한다)”  
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의료비”  
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제액  
이”를 “공제대상의료비가”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  
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  
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  
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  
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장해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61조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6(맞벌이부부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급여액(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를 한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맞벌이부부특별공제”라 한다.

④ 제61조 제5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 제5항중 “급여액”은 “맞벌이부부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제63조 제1항중 “년 48만원”을 “년 60만원”으로 한다.

제67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자 또는 장해가 치료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료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제69조 제2항 제3호중 “소득표준율”을 “소득추계방법”으로 한다.

제7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기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73조 제1항중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 제1항중 “거주자로서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를 “그 산출세액에서”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 제1항중 “(근로소득·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근로소득·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이 있는 자외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 및 제85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5조 제2항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98조 제1항중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 제4항 제1호중 “무주택근로자공

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 다만,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부의 무자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2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을 한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화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화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

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 중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를 “과세기간종료후 31일이내”로 한다.

제1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진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을 “추계방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1조 제8항 제1호중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24조의 제목 “(소득표준율심의회)”를 “(소득표준심의회)”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소득표준율심의회”를 각각 “소득표준심의회”로 한다.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원 미만인 때”를 각각 “500원미만인 때”로 한다.

제137조 단서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 · 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44조 제1항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 어촌계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이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 한다.

(가) 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호에서 “장외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목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 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52조 제4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 · 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55조 제1항중 “무주택근로자공제”를 각각 “무주택근로자공제 · 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한다.

제184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 “제3항 제1호단서 또는 제4항 제1호단서”를 “제3항단서 또는 제4항단서”로, “제3항 제1호본문 또는 제4항 제1호본문”을 “제3항본문 또는 제4항본문”으로 하며, 동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 년도의 직전 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00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④ 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외의 자로서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4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법률 제4281호 소득세법증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1993년 1월 1일”을 “1996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제1항 및 제61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 · 제117조 ·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장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제1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 □ 개정이유 □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 시책 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균형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세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1.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 (1)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 주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230만원 내지 490만원에서 25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61조 제1항).
  - (2) 근로자가 본인 또는 동거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현재는 연 24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 50만원 까지 공제하여 주도록 함(법 제61조의2).
  - (3)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현재는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동거하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장해인의 재활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에 관계없이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61조의3 제2항).
  - (4) 맞벌이를 하는 주부근로자의 경우 주부의 취업으로 인하여 추가적 가사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여 연 54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법 제61조의6).
  - (5)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인 기초공제금액을 연 48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인상함(법 제63조).
  - (6)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여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현재 연간 총급여

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함(법 제78조의2).

2. 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 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법 제70조 제1항).

3. 다음과 같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함.

(1)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현재는 그 사업개시년도에도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법 제83조 및 제85조).

(2)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세액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소액불징수금액을 5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32조).

(3) 연간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상황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 복식부기의무자의 연간 수입금액기준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법 제184조).

4. 다음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1) 중소기업간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공제부금을 불입한 자에게 동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부금 이자와 인삼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배당에 대하여 현재는 소득세를 25퍼센트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도 일반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20퍼센트)만으로 과세종결처리하도록 함(법 제144조).

(2) 장외등록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25퍼센트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외등록법인증 중소기업등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당해 상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퍼센트 원천징수만으로 과세종결처리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한하여 20퍼센트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정산하도록 함(법 제144조).

5. 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년 1월 1일이후에서 1996년 1월 1일이후로 연기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